

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										처리기간	
										30 일	
신 청 인	성 명		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				
	업 체 명				전화번호						
	주소 또는 소재 지										
신 청 내 용											
사업 명칭						사업 위치					
시행면적		㎡				시행기간		~			
토지이용계획 (㎡)	용 도 별										
	면 적										
기반시설계획	시 설 별										
	개 요										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6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 특별자치도지사 귀하											
첨 부 서 류	1. 준공설계도서(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) 2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8호의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 과도 3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(「국가통 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합니다) 4. 환지계획서 및 신·구 지적대조도(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56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5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(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6.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7.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8. 그 밖에 준공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									수수료 없 음	

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